

##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내용

개정 언론중재법이 8월 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 내용은 포털뉴스와 IPTV가 위원회 조정대상 매체에 포함된 것이다. 또 인터넷매체에 보도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의무를 부과하고, 포털과 기사제공 언론사의 관계에 대한 특칙을 두어 일괄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온라인 조정신청방법이 '전자우편 등'에서 '전자문서 등'으로 바뀐 점 등도 눈에 띈다. 언론중재법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포털뉴스 및 IPTV 등 인터넷 기반 매체 조정·중재대상에 추가

지난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기사에 대해서도 조정·반론·추후보도 청구를 가능하게 하고, 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였다. 그러나 주요 인터넷매체라 할 수 있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이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배제되어 아쉬움을 남겼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결국 이번 법 개정에서는 포털뉴스, 언론사닷컴 및 IPTV도 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의할 점은, 이들 새로운 매체가 조정·중재대상에 추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언론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개정법은 언론의 범위를 여전히 '방송, 신문, 잡지, 뉴스통신, 인터넷신문'으로 국한하고 있다(법 제2조 1호). 따라서 이 조항은 포털뉴스로 대변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이 비록 언론은 아니지만 그 수행하는 기능 내지는 영향력 측면에서 언론에 준

하는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뉴스서비스' 개념의 지나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서 정하는 매체는 언론중재법 적용에서 배제되도록 조치,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친목·교육·종교 목적의 홈페이지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피신청사건의 특별 중재부 배정

종전 언론중재법은 기피신청사건(사건담당 중재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중재위원을 심리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심리를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중재위원만을 제외하고 기존 중재부에서 계속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기피신청사건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피사건에 대한 심리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피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중재부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별도의 중재부(특별중재부)에서 처리하도록 했다(법 제10조 제4항). 또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가 있는 중재위원은 중재부의 허가를 얻지 않고, 스스로 심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했다.

### 인터넷에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본문 자체에 대한 수정 요구 가능

인터넷이라는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에서 서비스 중인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정보도가 아닌 해당 기사 자체에 대한 수정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

청구가 가능한 기사는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 또는 매개 중에 있는 기사이며, 이미 삭제되었거나 내려진 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무상 새로운 형태의 정정보도청구가 자리를 잡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보도의 배열 등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할 의무 부과

종전 언론중재법에도 기사 보관의무 관련 규정은 있었으나,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는 정도였다. 개정 언론중재법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뿐만 아니라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역시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5조 제8항). 그러나 전자기록 보관의무가 해당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개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기록을 보관하도록 하여 보관의 범위와 방법 등 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이는 현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판단되지만, 자칫 보관의무를 부여한 규정의 취지를 몰각시킬 수도 있는 위임이라는 지적도 있다.

### 인터넷뉴스서비스 관련 특칙규정을 신설, 피해확산방지 및 일괄피해구제의 원칙을 도모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의 구제는 신속성이 생명이다. 그 동안 위원회의 조정·중재절차가 다른 피해구제 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기는 하였으나, 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는 피해의 빠른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개정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1항). ‘표시의무’는 정

정·반론·추후보도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포털사들은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해당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가 청구된 사실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통보해야 하고, 포털의 통보가 있거나 하면 해당 언론사 역시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법 제17조의2 제2항). 또 기사 생산자인 언론사에 피해자가 먼저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언론사에서 정정보도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러한 사실을 포털사에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 제17조의2 제3항).

###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사유 명시한 서면 제출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거나,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었다. 다만, 언론조정중재규칙 관련 규정에서 위원회가 마련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여 이의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이의신청하는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다(법 제22조 제3항).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막아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외에도 온라인조정신청 시 보다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문서 등’에 의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하자 있는 중재결정의 취소절차가 누락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중재결정취소도 가능하게 한 점도 변경된 내용이다. 또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된 정정보도청구의 재판방법을 본안소송에 의하도록 했다.

제3자에 의한 시정권고신청제도가 삭제된 점도 이번 개정법의 중요 사항이다.

정 리 : 양재 규 조사팀장